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란?

Q.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PLS제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농산물,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등록,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사용하시고 농약의 포장지 표시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농진청 홈페이지 농약정보시스템 (<http://pis.rda.go.kr>)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농약 PLS를 도입했습니다.

시행 전후 기준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준 설정 농약	기준에 따라 적용	PLS대상
기준 미 설정 농약	1. 국제 기준(CODEX) 적용 2.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3.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이하) 적용

\* 일률기준인 0.01mg/kg은 밀, 벼 등의 일 수종의 곡소량으로 불감종 수종을 제외합니다.

정식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은 검사 시 부적합을 받아 국내 유통이 금지됩니다.

\* 안전사용기준 :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농약관리법 근거)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란은 독자분들께 사양, 유통, 질병, 시설 등 전반적인 양계에 관한 질문을 받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답변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ch-spirow@hanmail.net](mailto:ch-spirow@hanmail.net)(장성영 기자), [wg1167@hanmail.net](mailto:wg1167@hanmail.net)(임설희 기자)